

청주교육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정 1994. 1. 1

1차 개정	1996. 7. 26.	규칙	제1036호
2차 개정	2000. 2. 3.	규칙	제1047호
3차 개정	2000. 10. 11.	규칙	제1057호
4차 개정	2001. 12. 4.	규칙	제1076호
5차 개정	2002. 12. 31.	규칙	제1101호
6차 개정	2005. 5. 12.	규칙	제1131호
7차 개정	2006. 12. 19.	규칙	제1169호
8차 개정	2017. 9. 21.	규칙	제1450호
9차 개정	2020. 12. 9.	규칙	제157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주교육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대상) ①생활관은 매학기 등록 절차를 마친 재학생에 한하여 입사할 수 있다.

②생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제한 및 학년비율은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할 수 있다.

③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관 정규 개사기간 외의 기간에 한하여 제①항의 입사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입사를 허락할 수 있다.

제3조 (개사기간) 생활관의 개사기간은 하계 및 동계 휴가 기간을 제외한 개학 기간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사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사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의 이용) ①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입사 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사생이 아닌 자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사생이 아닌 자의 생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내생활) 생활관의 사내 생활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활동을 허용한다.

제6조 (사생준칙) 사내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장은 사생준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7조 (관장) ①생활관에 관장 1명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관장은 사무를 통할하고 생활관을 대표한다.

제8조 (직원) ①행정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제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은 생활관 운영, 회계업무, 사생관리, 사생지도 등을 담당한다. <2017.9.21. 개정>

②생활관에는 운영에 필요한 자체직원을 둘 수 있다. <2017.9.21. 개정>

③자체직원은 제9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임명한다. <2017.9.21. 개정>

④자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사무직원은 60세, 경비원 및 위생원은 65세로 한다.

<2017.9.21. 개정>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 (운영위원회) 생활관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장, 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및 전임 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부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개정 2020.12.9.>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 시행 세칙의 제정 및 폐기
2. 생활관비의 예산 및 결산
3.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 (회의) 회의는 학년초 및 학년말에 정기 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자치기구

제13조 (자치기구 조직) ①사생은 사내 생활을 자치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치 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②생활관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규정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입사 및 퇴사

제14조 (입사) 생활관에 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개사 시에 입사할 수 있다.

제15조 (입사기간) 입사 시기는 제3조의 개사기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사시기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입사제한) 관장은 사생들의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퇴사) 사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퇴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퇴사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퇴사처분) 관장은 사생이 지켜야 할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퇴사 처분할 수

있으며 사안이 학칙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장에게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제 6 장 관 리 및 기 타

제19조 (경비) 생활관의 시설비 및 시설 보수비 이외의 사내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 세칙) 이 규정의 시행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청주교육대학교생활관 사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학년도 이후 생활관 입사생부터 적용하며 1999학년도 생활관 입사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21. 개정 제1450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9. 개정 제1573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